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과 학 기 술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40호, 2020.6.9.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1)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일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일 90일 이내로 규정함
-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기한을 국회가 해당연도 예산을 의결한 날로부터 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함
- 3)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실적 작성지침 및 지침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 기한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 29. ~ 11. 9.) 예정
3) 행정규제 : 심사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포함되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육성과 신산업 창출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구진흥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5.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의 시행 중 과학기술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중장기투자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 작성지침(이하 “실적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장은 실적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실적을 점검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적 점검결과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가 해당연도 예산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개최되

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 및 중장기투자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추진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장기투자전략 등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포함되는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 <u>1.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육성과 신산업 창출에 관한 사항</u> <u>2.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u> <u>3.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4. 기초연구진흥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u> <u>5.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 관련 법·제도의 개</u>

<신 설>

선 등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
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
본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의 시행 중 과학
기술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
생하여 중장기투자전략의 수정
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정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
기투자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 실적 작성지침(이하 “실적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장은 실적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실적을 점검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적 점검결과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가 해당 연도 예산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 및 중장기투자전략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추진실적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835